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6
------------	-----

2018. 12. 1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안전명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 입안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 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 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	대로	2	25	30~ 40	주간선 도로	10,000	성동교 남단	대로 2-26 교점	일반 도로	-	내무부고시 23호 (52.3.25)	아차산로
변경	대로	2	25	20~ 40	주간선 도로	10,000	성동교 남단	대로 2-26 교점	일반 도로	-		

3. 입안사유

○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25호선(아차산로)에 대하여 지형여건상 도로개설이 곤란한 미집행 구간에 대하여 현황도로를 반영하여 폭원축소 및 선형을 변경 결정코자 함

- B=30m → 20~25m (L=862m)

4. 도시관리계획 사항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용도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5. 주민 의견청취 및 공람공고

- 열람기간 : 2018.01.11. ~ 01.25. (14일간)
- 재열람기간 : 2018.07.26. ~ 08.09. (14일간)
- 공고게재 : 일간신문(세계일보, 아주경제, 문화일보, 매일경제),
시보, 서울시청 홈페이지 게재
- 의견청취결과 : 의견없음

6. 관련부서(기관) 협의

- 협의기간 : 1차 2018.01.11. ~ 01.25. (14일간)
2차 2018.07.26. ~ 08.09. (14일간)
- 협의결과 : 의견없음

7. 교통성검토

- 현재 이용 중인 아차산로의 현황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 문제없음

8. 환경성검토

- 도로 신설 없이 현황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 생태면적, 녹지 훼손, 비오톱 등의 변화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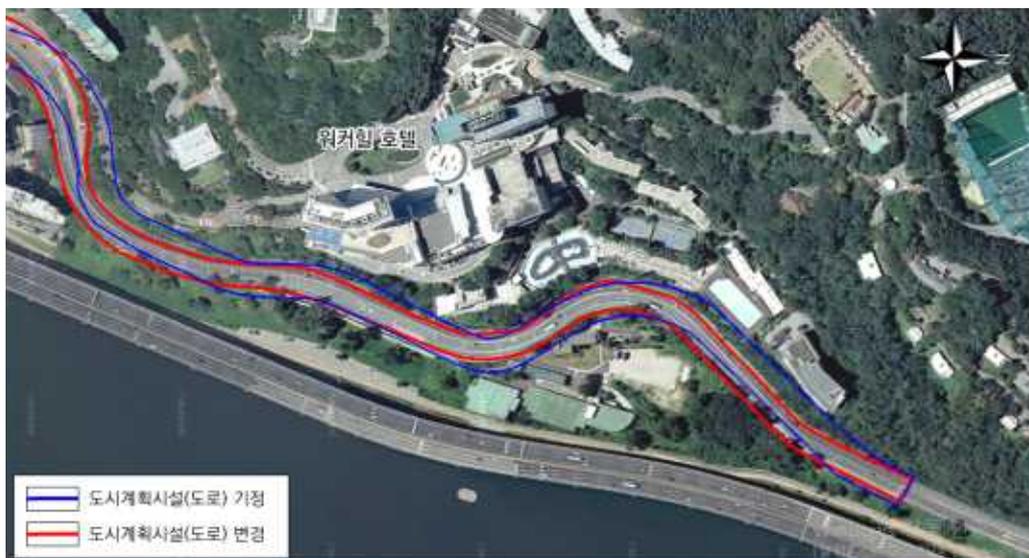
9. 기 타

- 재원조달계획
 - 해당없음
- 추진경위
 - '52.03.25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내무부고시 제23호)

- '17.11.2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시의회 보고(원안동의)
 - * 자연환경훼손, 물리적 설치곤란, 과도한 재정소요 등으로 일부해제
- '18.01.11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녹지)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 * 의견없음
- '18.07.26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녹지) 변경 결정(안) 재열람공고
 - * 의견없음

10. 검토의견

- 이 의견청취안은 아차산로 일부 구간의 폭원을 축소하고 선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2018년 10월 17일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 2-25호선)인 아차산로 중 지형여건상 도로개설이 어려워 장기미집행된 구간(서울 그랜드 워커히일대(862m))으로서, 현황도로의 폭원 및 선형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도로를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임.
- 대상지 구간(워커히호텔~구리 시계 구간, L = 862m) : 폭원 축소(30m(왕복6차선) → 20~25m(왕복4차선)) 및 현황도로 선형 반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시행령에 따라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등(이하, 장기미집행시설)²⁾의 현황

1) 법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 중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등” 정의 (법 제48조제1항)

- ▶ 도시계획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의미함 (실시계획인가 및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 ▶ 부분 시행되었거나 실시계획인가가 나지 않은 잔여부분은 미집행시설로 봄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시의회에 보고해 온 가운데, 이 사안은 일부해제 대상으로 보고되었고('15년, '17년),

아차산로의 교통량 및 통행속도 조사결과(붙임1)를 보면, 현황 도로를 유지하더라도 특이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자동 실효('20.7.1.)를 앞두고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의 신속성이 요구됨을 감안할 때, 아차산로 도로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서울시 관리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150건(101.32㎞)이고, 이 중 19건은 해제(폐지), 18건은 일부해제, 나머지 113건은 존치할 계획인 가운데, 현재까지 해제 완료된 시설은 6개 소로서(해제 2건, 일부해제 4건, 붙임2), '20년 실효를 앞두고 장기미집행시설 정비가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붙임1〉 아차산로 소통분석 (자료: 시설계획과)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일원
- 분석방법 : 서울시 상시지점 교통량 및 통행속도 서비스수준 산정
- 분석기간 : 2017.01. ~ 2017.12.
- 조사지점 :
 - 교통량 - 2017 서울특별시 교통량 조사자료, 서울시, 2018.03
 - 통행속도 - 2017 서울특별시 차량통행속도 보고서, 서울시,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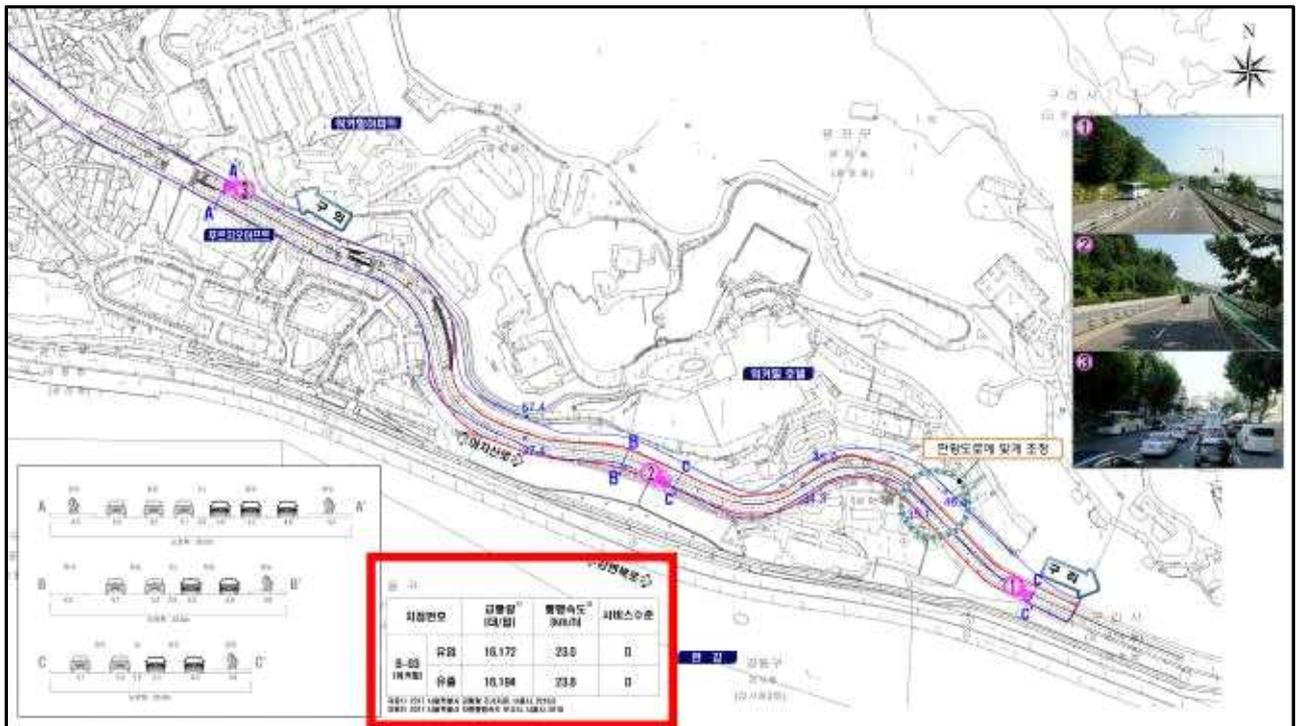
교통량 및 속도 조사결과(위커힐 앞)

- 교통량(아차산로 : 위커힐)
 - 첨두월 9월, 첨두요일 금요일 유입17,785대/일, 유출 16,739대/일
- 통행속도(아차산로 : 뚝섬역~아차산로서울구리시계)

구 분	오전(07~09)			낮(12~14)			오후(17~19)			전일(06~22)		
	양방	유입	유출	양방	유입	유출	양방	유입	유출	양방	유입	유출
통행속도	26.9	28.7	25.4	23.4	23.5	23.3	20.4	20.2	20.7	23.3	23.8	23.0
서비스수준	D	D	D	D	D	D	D	D	D	D	D	D

분석결과

- 교통량은 34,524대/일로 통행속도는 20.2~28.7km/h, 서비스수준“D”
- 해당구간 첨두시 소통상황은 현재 비교적 양호



*본 분석결과는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검토사항임

※ 『도로용량편람, 2013, 국토해양부』 에 따른 도시 및 교외간선도로의 평균 통행속도별 서비스수준 적용

서비스수준	A	B	C	D	E	F	FF	FFF
통행속도 (km/h)	≥ 49	≥ 39	≥ 29	≥ 20	≥ 12	≥ 8	≥ 5	< 5

<서비스 수준 상황 설명>

- A : 자유속도의 90%이하로 근본적으로 자유흐름 운행상태, 차량들은 교통류 내에서의 운전조작에 전혀 방해받지 않음.
- B : 자유속도의 70%이하로 교통류 내에서의 이동은 약간의 제약을 받지만 정지지체는 크지 않고 운전자들은 거의 긴장감을 느끼지 않음.
- C : 자유속도의 50%이하로 안전운행상태이나 운行道중 B보다는 운전조작의 제약이 있으며, 긴 대기행렬발생
- D : 자유속도의 40%이하로 교통량이 조금만 증가하더라도 교차로 접근로의 지체가 커지고 차량속도가 현저히 감소
- E : 자유속도의 1/3이하로 교통상황에 의해 상당히 큰 접근로 지체가 나타남
- F : 교차로의 소통장애가 발생. 자유속도의 1/4이하
- FF~FFF : 차량이 전방신호를 통과하는데 2~3주기 이상의 시간이 소요

※ 『도로설계편람, 2013, 국토해양부』 에서는 도로의 개설시 도시지역의 일반도로에 대해 서비스수준 “D”를 적용하여 계획 수립

제2편 도로계획 및 기하구조, 204 용량분석

지방지역 고속도로의 경우 설계 서비스수준으로 C를 사용하고 도시지역 고속도로 또는 일반국도의 경우 설계 서비스수준으로 D를 사용한다. 지방지역 도로는 장래 교통량 변화가 크고 운전자들이 높은 이동성을 요구하는 점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설계 서비스수준을 적용하고, 도시지역 도로는 장래 교통량 변화가 크지 않고 운전자들이 교통 혼잡 상황에 비교적 민감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수준을 적용한다.

구 분	지방지역	도시지역
고속도로	C	D
일반도로	D	D

〈붙임2〉 서울시 관리 장기미집행시설 집행 현황 (자료: 시설계획과)

- 존치시설(113건, 보상금액 53,473억원) 중 보상 완료(1건, 보상금액 0.18억)
- 해제시설(37건) 중 해제완료(6건), 해제추진중(31건)

(단위 : 건, 억원)

구 분	규 모 (km ²)	총 계 (건)	재정비(안)								
			존치		일부해제			해제(폐지)			
			계 (건수/금액)	보상완료 (건수/금액)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총 계	101.31	150	113/53,473 (재정 49,117/ 비재정4,356)	1/0.18	18	4	14	19	2	17	
도 로	2.52	29	15/5,635 (재정 3,954/ 비재정1,681)	-	13	2	11	1	-	1	
광 장	0.29	8	2/592 (재정357/ 비재정 235)	-	4	2	2	2	-	2	
공 원	96.78	76	75/40,619 (재정40,619)	1/0.18	-			-			
녹 지	0.55	11	10/1,922 (재정944 /비재정978)	-	-			1	-	1	
학 교	0.21	19	7/4,567 (재정3,105/ 비재정1,462)	-	-			12	2	10	
수 도	0.39	3	3/138 (재정138)		-			-			
자동차정류장	0.01	2	-		1		1	1		1	
운동장	0.45	1	-		-			1		1	
체육시설	0.11	1	-		-			1		1	

*비재정 : 공공기여, 기부채납 등 민간재원 투입을 통한 시설 집행

- 도로 일부해제 추진중인 11건 중 2건(광운로12길~마들로1길, 석계·한천로)은 존치의견이 있어 존치예정. 2건에 대해서는 19년 초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예정
- 광장 일부해제 추진중인 2건 중 1건(한강대교북단광장)은 존치 의견이 있어 존치예정. 1건에 대해서는 19년 초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예정